

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2. 10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2. 13
- 다. 상 정 일 자 : 2006. 2. 28 (제1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재무과장 박노선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5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 승인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사하구 신평동 646번지 신평차량기지창내 유희지를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신청사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함

3. 취득대상 재산현황

소재지	지 목	면적(m ²)	예정가격(천원)	소유자
신평동 646번지	잡종지	16,700	12,500,000	부산교통공사

4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5. 검토의견

부산교통공사 소유의 신평동 646번지 신평차량기지창내 유휴지는 121,330㎡(36,760평) 인바, 이 중 우리 구청 신청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6,700㎡(5,060평)을 구입 하는 것은 현재의 청사가 협소하고, 주민이 민원 때문에 구청을 방문할 경우 불편을 주므로 이 부지를 구입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생략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